第306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2年2月27日(月)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윤상일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안녕하세요? 윤상일입니다.

지난 2월 2일 새누리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 절차가 마쳐져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운영위에 보임이 되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윤상일 위원님은 노철래 위원님의 사임으로 결원이 있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22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 안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하여 이명규 위원님과 이상권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회에서 안건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처리가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을 통해서나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6인 소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이 오늘 서면동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명규 위원님 나오셔서 서면동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이명규 위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쟁점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둘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중 예산안 등을 제외한 의안은 일정한 숙려기간 후 30일이 경과하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각각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 실시 중에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회 없이 계속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의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산안 등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곱째,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어느 누구도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아홉째,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의 경우 경고 또는 사과는 수당 등의 2분의 1을, 출석정지는 수당 등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째,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를 추가하고,

열한째,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려는 것 등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난 14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의 개정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민주통합당의 위원님들이 당내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부분부터는 다음에 민주통합당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 데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모든 토론은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에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민주통합당 위원님들이 안 계셨을 때는 다음에 한번 전체 모여서 대체토론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기 갑	김 낙 성	김 세 연	박 영 아
유 일 호	윤 상 일	윤 영	이 명 규
이 상 권	이 정 선	이 화 수	황 우 여

○청가 위원(1인)

이 윤 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노철래	윤상일	새누리당	2012. 2. 15

○의안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2. 13 심재철·허원제·김정훈·유정복·박선영·강명순·손숙미·김소남·전여옥·배영식·유정현·나성린·김옥이·강성천·김동성·박상은·권택기·신지호·이애주·정옥임·신상진 의원 발의)

2월 14일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306회국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2. 2. 27 의장 제의)

2월 27일 회부됨